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025.03.13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제 4 조 [기본자세]
- 제 5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제 6 조 [직무와 권한]
- 제 7 조 [의무]
- 제 8 조 [책임]
- 제 9 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 10 조 [구성]
- 제 11 조 [위원장]
- 제 12 조 [회의]
- 제 13 조 [소집권자]
- 제 14 조 [소집절차]
- 제 15 조 [결의방법]
- 제 16 조 [부의사항]
- 제 17 조 [의사록]

제 3 장 감사부설기구

- 제 18 조 [감사부설기구]

제 4 장 감사실시

- 제 19 조 [감사계획의 수립]
- 제 20 조 [감사의 실시]

- 제 21 조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제 22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 제 23 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등]

제 5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 제 24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제 25 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
- 제 26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 6 장 보칙

- 제 27 조 [감사록의 작성]
- 제 28 조 [규정의 개폐]

부 칙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5. 03. 1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위메이드(이하 "회사")의 정관 제 38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 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 ⑤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함은 외감법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 ⑥ 이 규정에서 '외부감사인'이라 함은 외감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기본자세)

① 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5 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관한 조사권.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에 관한 조사권

3.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4. 이사회 소집청구권 및 소집권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7. 이사 보고의 수령권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9. 이사·회사간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권한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요청에 대한 권한

12.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의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조(책 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위원회의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10 조(구 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 15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별 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3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2영업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5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16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1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3)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5)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6)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제 17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5 영업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부설기구

제 18 조(감사부설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감사요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를 감사부설기구로,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감사요원으로 각각 간주한다.

③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의 임면 및 인사이동에 대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하고, 감사요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실시

제 19 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0 조(감사의 실시)

① 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 업무는 다음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 정보시스템 내에서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회사 및 하위 조직의 전략적 목표 달성
2. 재무 및 일반 업무 정보의 신뢰성과 무결성
3. 업무와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4. 자산 보호
5. 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의 준수

③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6 항, 제 415 조의 2 제 7 항 및 제 447 조의 4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이사로부터 제출 받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2 조(내부회계관리제도)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등)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 5 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24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 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제 25 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외감법 제 13 조제 2 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본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외부감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26 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 27 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8 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25. 3. 13.)

이 규정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